

# 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 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76
----------	----

2022. 10. 21.(금)  
건설환경소방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변종오 의원 등 7인

나. 발의일자 : 2022년 9월 30일

다. 회부일자 : 2022년 10월 4일

라. 상정일자 : 2022년 10월 13일

- 제40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: 상정·의결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## 2. 제안 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변종오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상위법령의 위임 근거 조문을 구체적으로 밝히고,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방법에 관한 규정 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「자동차관리법」상 위임 근거 조문의 구체적 명시(안 제1조)

-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방법에 관한 내용 보완(안 제2조)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등(안 제3조, 제4조, 제6조)

### 3. 검토보고 요지(김홍식 수석전문위원)

#### 가. 조례제정의 필요성

-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위임 근거 조문의 구체적인 명시와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방법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고, 그 밖에 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”에 따라 일부 조문의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#### 나.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- 개정안은 「자동차관리법」상 위임 근거 조문의 구체적 명시 및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권자를 명확화하기 위해 “도지사”를 명시하는 등 발급대행자 지정 방법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, 그 밖에 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”에 따라 일부 조문의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의 정당성이 인정됨.
- 조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
  - 안 제1조는 목적규정으로 상위법규인 「자동차관리법」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임근거를 구체화함.
  - 안 제2조제2항은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권자를 명확화하기 위해 “도지사”를 명시하였으며, 같은 조 제3항은 발급대행자 지정방법을 정하는 조항으로 지정권자를 간략히 규정함.
  - 안 제3조는 대행자 선정기준을 규정하는 것으로 선정권자인 “도지사”를 명시함.

- 안 제6조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별도의 시행규칙으로 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함.
- 기타 조문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
- 관련 부서: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검토한 결과 “특이사항 없음”
- 입법예고(‘22.10. 4.~‘22.10.11.)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.

#### 다.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
-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 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,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.

#### 라. 검토의견

- 「충청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, 상위법령의 위임근거를 구체화하고,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방법에 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, 그 밖에 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”에 따른 일부 조문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충청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충청북도” 를 “「자동차관리법」 제20조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” 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선정시는 공개모집” 을 “선정하는 때에는 공개모집의 방식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제1항에 따른 대행자” 를 “도지사” 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도지사가 대행자를 지정하고자 할 때” 를 “도지사” 로, “이전” 을 “전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제2항” 을 “도지사는 제2항” 으로 한다.

제3조 중 “「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」 제8조” 를 “도지사는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제8조” 로, “장비 등의 기준” 을 “장비기준” 으로, “관청” 을 “관청과” 로, “적정한 대행자” 를 “대행자” 로 한다.

제4조 중 “대행자의 대행기간 연장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3조에 위배되지 않는 한” 을 “대행자가 대행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선정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대행기간을” 로 한다.

제6조를 삭제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충청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의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 <p>제2조(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방법) ①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가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(이하 “대행자”라 한다)를 <u>선정하는 공개모집</u>으로 하여야 한다.</p> <p>② <u>제1항에 따른 대행자</u>는 지역여건, 자동차대수, 대행자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·군별로 둘 이상의 대행자를 지정한다. 다만, 공개모집 결과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1개 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.</p> <p>③ <u>도지사가 대행자를 지정하고자 할 때</u>는 대행기간 만료일 3개월 <u>이전까지</u> 지정신청 절차, 지정방법, 대행기간, 사업구역, 지정대상자 수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④ <u>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</u>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자동차관리법」 제20조제1항에 따라 <u>충청북도</u> -----.</p> <p>제2조(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방법) ① ----- ----- 선정하는 때에는 <u>공개모집의 방식</u>-----.</p> <p>② <u>도지사</u>-----.</p> <p>③ <u>도지사</u>----- ----- <u>전</u>-----.</p> <p>④ <u>도지사는 제2항</u>-----</p>



## 관계법령

### □ 자동차관리법

- 제20조(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 등) ① 시·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9조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제작·발급 및 봉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(이하 “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”라 한다)를 지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. <개정 2009. 12. 29., 2013. 3. 23.>
- ②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, 장비 등의 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3. 3. 23.>
- ③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판의 발급 및 봉인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. <개정 2013. 3. 23.>
- ④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용 철형(凸形)을 관리하는 경우 도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, 유출(流出)하여서는 아니 된다.[전문개정 2009. 2. 6.]

### □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

- 제7조(지정신청 등) 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 2. 18.>
1. 사업계획서
  2. 사업장의 위치·시설개요
- ② 시·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역별 분포와 이용자의 편의 및 수요등을 고려하여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03. 1. 2., 2010. 2. 18.>
1. 사업장의 평면도와 시설의 명세서
  2. 사업장의 용지 및 사무실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

③ 시·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하는 때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확보하여야 하는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3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④ 시·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춘 때에는 업무개시일 및 사업구역을 정하여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지정하고,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 2. 18.> [제목개정 2010. 2. 18.]

**제8조(시설기준)**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등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. <개정 2010. 2. 18.>

**제10조(등록번호판발급대행업무의 폐지신고)**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업무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폐지예정일 30일전까지 시·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 2. 18.>

[전문개정 1999. 2. 19.] [제목개정 2010. 2. 18.]

**제11조(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등의 신분증)**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및 그 종사원은 등록번호판발급업무를 대행하는 때에는 별표 4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신분증을 달아야 한다. <개정 2010. 2. 18.>

[전문개정 1999. 2. 19.] [제목개정 2010. 2. 18.]

**제12조(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)** ① 등록번호판의 발급 및 봉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정하는 등록번호판발급 및 봉인수수료(등록번호판의 가격 및 부착비용을 포함하며, 이하 “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”라 한다)를 납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 2. 18.>

②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등록번호판의 발급 및 봉인을 받는 자 또는 소비자관련단체가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금액의 산출근거제시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에 관한 명확한 산출내역을 명시하여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 2. 18.> [전문개정 1999. 2. 19.] [제목개정 2010. 2. 18.]